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854
----------	-------

발의연월일 : 2026. 7. 9.

발 의 자 : 엄태영 · 권영진 · 박충권
이만희 · 안철수 · 윤한홍
이양수 · 서천호 · 이종배
김용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마약류 범죄는 SNS, 메신저 등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 특히 미성년자를 비롯한 청년층 중심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마약류에 접근하는 빈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반면, 현행법은 마약류의 제조·유통·투약 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고, 마약류의 온라인 상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은 없는 상황임.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협력 중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온라인을 통한 불법 마약류 유통 및 마약류 관련 범죄기법 확산을 보다 철저히 방지하고, 국민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4 신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4(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조제12호 각 목의 행위에 관한 정보(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이용자에게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그 밖의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협력 중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52조의4(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u> <u>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조제12호 각 목의 행위에 관한 정보(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이용자에게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그 밖의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u> <u>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협력 중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u> <u>③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